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0월 12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가.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기준을 강화하여 건축물에 대한 공사현장이 장기간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 나.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납부 대상에서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대수선을 제외하는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을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 정함(안 제15조의3제1항)
- 나.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납부 대상에서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대수선을 제외함(안 제17조)

다. 건축지도원의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건축지도원의 건축물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규정 삭제(안 제21조제1항, 안 제21조의2)

라. 대지에 설치하는 조경면적 확보 대상 건축물 중 보전녹지지역안의 건축물과 조경면적 중 식재면적의 확보비율을 삭제함(안 제22조, 안 제2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2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참조 : 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45, 팩스 032-440-8766, 이메일 : adiosever@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제1항 본문 중 “5천제곱미터”를 “1천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5천제곱미터”를 “1천제곱미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법 제13조 제2항”을 “법 제13조제4항”으로 한다.

제17조 단서 중 “건축에”를 “건축 또는 대수선에”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시설직렬(건축직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건축사
3. 건축분야 기술사
4. 건축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축분야에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5. 건축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축분야에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6.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로 건축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7. 대학(산업대학 등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학교를 포함한다)의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졸업 후 건축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8. 2년제 전문대학의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졸업 후 건축분야에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9. 고등학교의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건축분야에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제21조의2를 삭제한다.

제22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식재 등 조경기준) 대지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 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지도원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건축지도원으로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에치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의3(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건축공사현장안전관리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할 건축물은 연면적이 <u>5천제곱미터</u> 이상인 건축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u>5천제곱미터</u>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제15조의3(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 ----- ----- ----- <u>1천제곱미터</u> ----- ----- ----- ----- ----- <u>1천제곱미터</u> ----- -----.
②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최종 설계변경 시점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4항----- ----- ----- ----- ----- ----- ----- ----- -----.
③ ~ ⑦ (생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7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

제17조제2항 및 규칙 제10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경제자유구역청장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보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2.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3. 건축관련 업무 종사자로서 경제자유구역청장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신 설>

<신 설>

<신 설>

----- 건축 또는 대수선에 -----
-----.

제21조(건축지도원) ① -----

-----.

1. 시설직렬(건축직류) 공무원 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건축사
3. 건축분야 기술사
4. 건축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축분야에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5. 건축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축분야에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6.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생 략)

제21조의2(건축물의 유지·관리)

①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경 제자유구역청장 및 구청장이 건축지도원으로 하여금 건축물의 유지관리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집합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오피스텔로서 10세대·실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보로 건축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7. 대학(산업대학 등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학교를 포함한다)의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졸업 후 건축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8. 2년제 전문대학의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졸업 후 건축분야에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9. 고등학교의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건축분야에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3.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청장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건축물

제22조(조경면적 등) ① 건축주
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
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
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
지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
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
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
을 확보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보전녹지지역안의 건축물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40퍼센
트 이상. 다만, 허가권자가
대지 및 주변의 수림상태가
양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
다.

② ~ ⑤ (생략)

제23조(식재 등 조경기준) 대지안
에 설치하는 조경면적중 식재면
적은 조경면적의 100분의 60이
상으로 하고, 그 밖에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법 제42조제2

제22조(조경면적 등) ① -----

-----.

1. ~ 3. (현행과 같음)

<삭 제>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3조(식재 등 조경기준) 대지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 기준, 조
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은 법 제42
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
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따른

<u>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u> <u>시한 조정기준에 의한다.</u>	<u>다.</u>
---	-----------